일본의 쌀 수입 개황(MA쌀 동향)

오사카지사 자체기획단신 30호(2016.11.17)

일본의 MA쌀 시장개황

- 일본의 MA(Minimum Access)쌀의 수입량은 2015년으로 약 76만톤(현미 기준)이며, 수입쌀을 관세화 한 2000년 이후 지속되고 있다. MA쌀은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합의된 것으로 해마다 수입량을 의무화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최소한의 접근 기회(저관세 수입물량을 설정)을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원칙적으로 관세 이외의 모든 국경조치를 관세로 바꾸겠다는 이른바 포괄적 관세화(예외 없는 관세화)가 합의되어 기준기간(1986~88년) 동안 수입량이 거의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최저수입물량(MA)으로서 당시의 국내 소비량의 3%를 수입량으로 인정하고 이를 6년간 5%까지 확대하도록 되었다. 단, 관세화를 하지 않는 특례조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3→5%의 MA를 4→8%로 확대하게 되었다. 일본은 관세화 예외조치를 선택하였고 1999년 4월 1일 쌀 관세화가 이루어지기 까지 매년 MA쌀의 수입물량은 증가해왔으며 2000년 이후 76.7만톤으로 고정되었다.

- MA쌀은 주로 가공용과 원조용으로 일부가 주식용 및 사료용으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재고로 비축된다. 또한 일본에서는 MA쌀이 주식용으로 판매된 경우에는 해당 수량 이상의 정부에서 관리하는 국산 쌀을 주식용 이외의 용도로 처리함으로써 주식용 국산 쌀의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일본 MA쌀의 수입물량 추이(1995년~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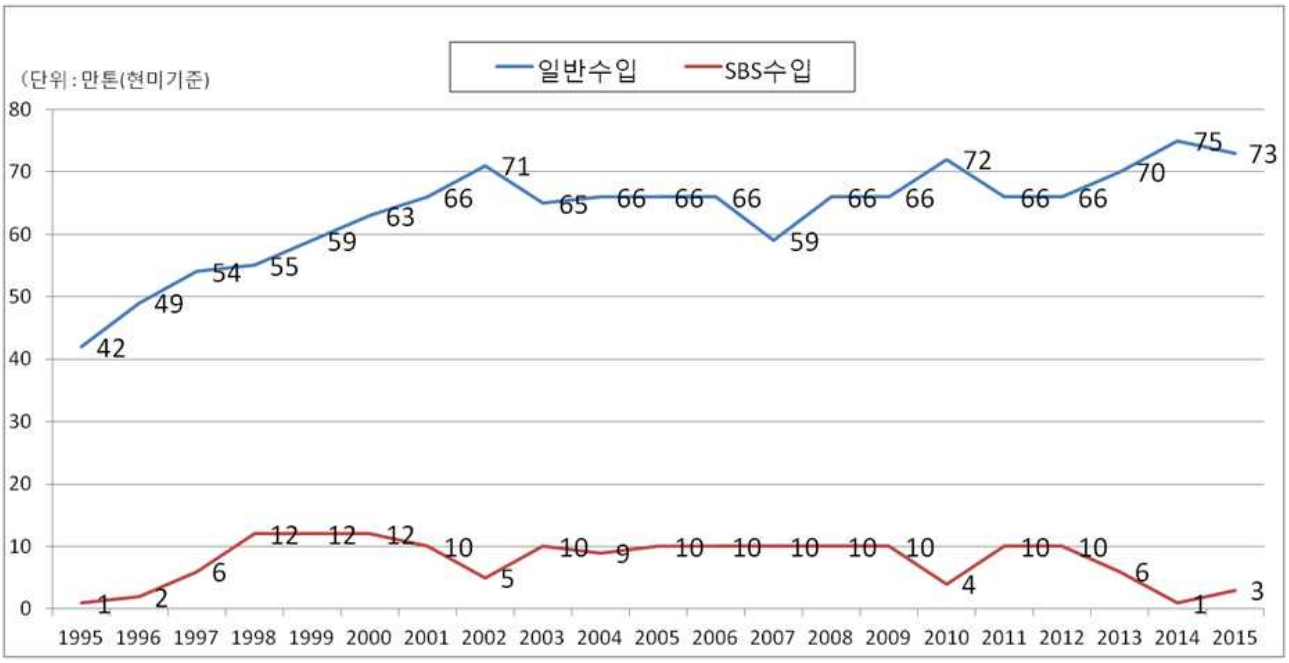

MA쌀 거래방법

- MA쌀을 국가가 수입하는 경우 입찰로 수입자를 결정하고 해당 수입업자를 통한 매입을 실시하는 '일반수입방식'과 수입업자와 국내의 수요자가 함께 입찰에 참여하는 'SBS(Simultaneous Buy and Sell : 매매동시계약 수입방식'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SBS 수입방식을 채용함으로써 국영무역의 틀 안에서 실질적인 민간거래(수입업자와 국내 수요자의 직접 거래)를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수입방식】	① 수입업자가 국가의 입찰에 참가 ② 국가와 수입업자(낙찰업자)가 매입위탁계약을 체결 ③ 국가가 수입업자로부터 매입 ④ 그 후, 국가가 별도의 입찰을 통해 국내 수요자에게 판매
【SBS수입방식】	① 수입업자와 국내의 실수요자가 페어로 국내입찰에 참가 ② 국가와 수입업자, 실수요자 3자간의 특별매입계약을 체결 ③ 국가가 수입업자로부터 매입과 실수요자에 매도를 동시 진행

MA쌀 국가별 수입량

- 일본은 MA쌀 수입을 시작한지 약 20년이 지난 상황에서 1995~2015년의 누계 수입량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720만톤으로 약 47.8%, 태국이 463만톤으로 약 30.8%, 이 2개국에서 1,183만톤의 78.6%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MA쌀 국가별 수입량 구성비(1995~2015년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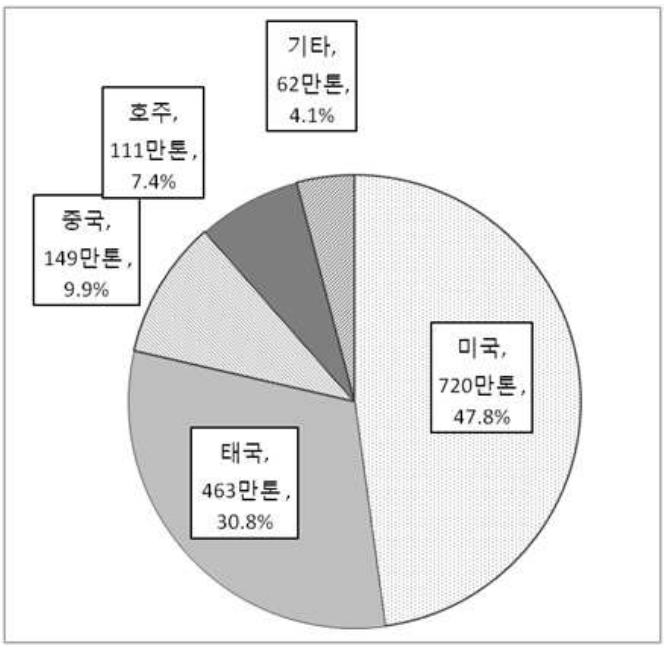

(출처: 농림수산성)

※ 국가별 수입량은 현미와 정미가 혼재되어 있어 이를 합한 값은 현미 환산 총 수입량과는 일치하지 않음.

MA쌀 판매현황

- 국영무역에 의해 수입된 MA쌀은 가격면에서 국산 쌀로는 충분한 대응이 어려운 용도(주로 가공식품의 원료용)중심으로 판매 되고 있으며, 주식용으로 판매되는 비율은 9.5%정도에 머물고 있다. 또한 MA

쌀에 대한 가공용 등의 수요는 수입량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사료용으로 판매 외에도 해외 식량 원조에도 활용되고 있다.

- 2015년 11월에 발표된 '미곡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에 관한 기본방침'에 따르면 1995년 4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정부 MA쌀 매입실적 기준 1,425만톤(현미 기준) 중 주식용은 135만톤, 가공용이 433만톤, 찹쌀(SBS수입분)이 21만톤, 해외 원조용이 313만톤, 사료용이 431만톤, 재고가 73만톤이며 재고에는 사료용 비축분 35만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 식용 부적합 판정된 4만톤, 바이오 에탄올용으로 판매된 15만톤이 있다.

- 수출국에서는 고수준의 관세(341엔/kg)에 더해 일본 소비자에 대한 접근이 충분하지 않다는 등의 의견도 있으나 2015년 11월의 TPP교섭에 의한 대략적 합의에서도 현행국가 무역제도를 유지하는 것과 관세율을 유지한 채로 미국(당초 3년간 5만톤) 호주(당초 3년간 0.6만톤)에 대해 SBS방식의 국가별 물량을 설정하기로 하였다.